

법무부 보호직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법무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9월 8일

법무부장관

1 임용예정인원 (29개 기관, 총 45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기관(근무지)
서울관	보호서기보	2명	정년 적용	서울보호관찰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동부관	보호서기보	1명	정년 적용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남부관	보호서기보	2명	정년 적용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북부관	보호서기보	1명	정년 적용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서부관	보호서기보	1명	정년 적용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정부관	보호서기보	2명	정년 적용	의정부보호관찰소 (경기도 의정부시)
고양지소	보호서기보	2명	정년 적용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 (경기도 고양시)
인천관	보호서기보	2명	정년 적용	인천보호관찰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서부지소	보호서기보	1명	정년 적용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천지소	보호서기보	1명	정년 적용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경기도 부천시)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기관(근무지)
수원관	보호서기보	2명	정년 적용	수원보호관찰소 (경기도 수원시)
성남지소	보호서기보	1명	정년 적용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경기도 성남시)
안산지소	보호서기보	2명	정년 적용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경기도 안산시)
평택지소	보호서기보	2명	정년 적용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 (경기도 평택시)
대전관	보호서기보	2명	정년 적용	대전보호관찰소 (대전광역시 중구)
천안지소	보호서기보	1명	정년 적용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충남 천안시)
청주관	보호서기보	2명	정년 적용	청주보호관찰소 (충북 청주시)
대구관	보호서기보	2명	정년 적용	대구보호관찰소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서부지소	보호서기보	2명	정년 적용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포항지소	보호서기보	1명	정년 적용	대구보호관찰소 포항지소 (경북 포항시)
구미지소	보호서기보	1명	정년 적용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 (경북 구미시)
부산동부지소	보호서기보	1명	정년 적용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서부지소	보호서기보	1명	정년 적용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울산관	보호서기보	2명	정년 적용	울산보호관찰소 (울산광역시 남구)
창원관	보호서기보	2명	정년 적용	창원보호관찰소 (경남 창원시)
광주관	보호서기보	2명	정년 적용	광주보호관찰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목포지소	보호서기보	1명	정년 적용	광주보호관찰소 목포지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전주관	보호서기보	1명	정년 적용	전주보호관찰소 (전북 전주시)
제주관	보호서기보	2명	정년 적용	제주보호관찰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 불가)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전체	보호직	보호서기보	•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대상자 상담 및 지도감독 •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집행 • 판결전·결정전·청구전 조사 • 보호기관 운영을 위한 당직 및 일반 행정업무 등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20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6.10.23.) 기준]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보호직	응시 자격 요건	자격증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6.10.23) 기준으로 판단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6.09.18.) 기준]

우대요건	○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 정보화 관련 자격증 ○ 한국어능력 등급 보유자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최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

직무 관련 대상 자격증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 2급 자격증 소지자 - 임상심리사 1, 2급 자격증 소지자

- 정보화 관련 자격증 (최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

정보화 관련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구 1급) 자격증 소지자
- ITQ(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A등급, B등급 자격증 소지자

- 한국어 능력 등급 보유자(등급별 차등 우대, 최상위 등급 1개만 인정)

※ 국어능력인증시험은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 KBS한국어능력시험은 KBS 한국어진흥원 주관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등급에 한하여 인정

○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등급별 차등 우대)

※ 2016.01.0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등급별로 차등 우대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직위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제32조 제3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9.8.(화) ~ 9.18.(금)	'26.9.16.(수) ~ 9.18.(금)	'26.10.14.(수)	'26.10.23.(금)	'26.11.16.(월)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로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게재 예정이니, 응시자는 반드시 확인 필요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09. 16.(수) ~ 09. 18.(금) 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
 - 응시원서는 붙임3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원서에 기재된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 ※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 ※ 근무 예정 기관 주소 및 연락처, 접수기관의 약도는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 범죄예방정책국 소개 > 소속기관 참조
- 등기우편 접수 주소 : 근무예정기관에 따라 붙임4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접수기관명' 행정지원과 인사담당자 ('근무예정기관명' 보호직 응시원서 재증) 반드시 기재

나.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별지서식 제7호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한국어능력인증시험 자격등급 사본 1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11. 16. ~ 12. 16.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7. 1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9 안내 및 참고사항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주최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관(붙임4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기관(근무지)
전체	보호직	보호서기보	45명	임용예정인원 참고
주요 업무	○ 보호관찰·전자감독 대상자 지도감독 및 상담 ○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집행 ○ 전자감독.보호관찰 대상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 및 심리평가 ○ 치료명령 집행 및 상담.교육.심리평가 ○ 법원, 검찰의 판결전.결정전.청구전 조사 및 심리평가 ○ 보호기관 운영을 위한 당직 및 일반 행정업무 등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전문성, 분석력,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필요 지식	○ 비행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상담·심리평가 능력 ○ 보호관찰제도 및 정책에 대한 지식 ○ 소년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관한 지식 ○ 청소년·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자이면서 상담자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대인관계 능력 ○ 심리학, 상담심리학, 심리평가 및 치료 등에 대한 전문지식			
응시 자격 요건	자격증	○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 정보화 관련 자격증 ○ 한국어능력 등급 보유자 ※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공고문 참조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 획득한 경우(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6.01.0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 별지서식 제3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산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3.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 A4 2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필수서류	○ A4 요약서 1매 + A4 5매로 작성 (총 6매 이내)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7호)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7.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사본 1부 : 필수서류	○ 미제출 시 자격 불인정
8. 주민등록초본 1부 : 필수서류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9.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구 분	내 용
10.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11.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12. 한국어능력인증시험 자격등급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1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시험에 한함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 사용 금지)

붙임 4

응시원서 접수기관

근무예정기관	응시원서 접수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보호관찰소	서울 보호관찰소	(025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272	02-2200-0206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서울동부 보호관찰소	(05857)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37	02-3400-8604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서울남부 보호관찰소	(081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 93	02-2650-2115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서울북부 보호관찰소	(01113)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78	02-3499-0812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서울서부 보호관찰소	(0376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217	02-390-0713
의정부보호관찰소	의정부 보호관찰소	(11763)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23번길 22-52	031-850-0304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			
인천보호관찰소	인천 보호관찰소	(222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13	032-870-1907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수원보호관찰소	수원 보호관찰소	(1649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143번길 102	031-290-6719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			
대전보호관찰소	대전 보호관찰소	(34839)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82	042-280-1276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청주보호관찰소	청주 보호관찰소	(28794) 충북 청주시 서원구 분평로 99	043-290-8909
대구보호관찰소	대구 보호관찰소	(41186)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49길 17	053-950-1104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대구보호관찰소 포항지소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부산 보호관찰소	(4670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89번길 11	051-580-3084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울산보호관찰소	울산 보호관찰소	(44717)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102번길 3-12	052-255-6104
창원보호관찰소	창원 보호관찰소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32	055-213-8908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보호관찰소	(6198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5
광주보호관찰소 목포지소			
전주보호관찰소	전주 보호관찰소	(54903)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9	063-249-2355
제주보호관찰소	제주 보호관찰소	(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064-728-5162

<별지서식 제1호>

응시번호	성명	지원코드	응시 분야
기재하지 않음			보호직

번호	제출서류명	제출유무	
		제출	미제출
1	응시원서 1부(수입인지 부착)(필수)	☐	
2	이력서 1부(필수)	☐	
3	자기소개서 1부(필수)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필수)	☐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필수)	☐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필수)	☐	
7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사본 1부(필수)	☐	
8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포함)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9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10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11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12	한국어능력인증시험 자격등급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13	한국사능력검정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유무 란에 반드시 “O” 표시

※ 필수 서류를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증빙서류 미제출시 우대사항 등 불인정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별지서식 제2호>

(앞 면)

응시원서 (원본)

법무부장관 귀하

본인은 법무부 보호직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00년 월 일

응시원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응시자격		☐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응시자격		☐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주의사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기관 행정지원과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직급과 지원 코드 기재
(예) 보호서기보 서울관, 보호서기보 대구서부지소
 -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중 선택
 -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⑥ 정부수입인지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 기재
-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의 응시자격 요건 중 선택

【 응시자격 】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우대요건 】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을 제외한 관련분야 자격증만 작성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 * 공고문에 안내되어 있는 자격증 중 상위 자격증 1개만 표기

자 기 소 개 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5매(총 6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법무부장관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법무부장관 귀하